

##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	------	------	------	----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임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⑤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 >) (서명 또는 인)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성방법

-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 ④: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신고)부서>

<신고인>